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6,516,207	17,295,486
일반회계		499,395,337	14,981,860
특별회계		77,120,870	2,313,626
	공기업특별회계	68,447,483	2,053,42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112,968	1,173,38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334,515	880,035
	기타특별회계	8,673,387	260,2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53,674	79,61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30,689	36,921
	도시재생특별회계	462,742	13,882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50,043	61,5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76,239	68,28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237,594천원(일반예비비 4,5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737,594천원, 내부유보금 538,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